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업”이란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을 끝내거나 기존 사업을 끝낸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는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경영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및 폐업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방 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용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1호 중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상공인”을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설정 및 정책 건의”를 “설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제공”을 “정보제공 및 정책 건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신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u>소득세법</u>」 제168조 또는 「<u>부가가치세법</u>」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소상공인기본법</u>」 제3조제2항----- ----- ----- ----- ----- -----.</p> <p>제2조(정의) ----- -----.</p> <p>1. -----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폐업</u>”이란 <u>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을 끝내거나 기존 사업을 끝낸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①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삭제></p>

<신 설>

<신 설>

제4조(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는 제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 경영안정 및 폐업 지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필요 -----
방법 -----
-----.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7.·8.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8.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용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킴,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1. 제4조에 따른 -----

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생략)

----- 설정-----

3. ----- 정보제공
및 정책 건의-----

4. (현행과 같음)